

강의담당시수에관한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본 대학교 교원이 1주간 담당하여야 할 강의담당시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주간시수의 계산) ①주간시수는 1주간의 강의담당시수를 합산한 시수로 한다.

②강의담당시수는 시간 단위로 계산하되, 소숫점 이하 첫째 자리까지 환산한다.

③담당과목에 실험·실습 또는 실기시간이 포함된 경우의 강의담당시수는 강의시간수에 별표 1에 의한 환산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시수(환산시수)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과목의 수업은 반드시 교원이 담당한다.(개정 2012.09.01., 2013.03.01)

④1교과목의 강의를 2인 이상이 담당한 경우의 강의담당시수는 그 교과목의 강의를 1인이 담당한 경우의 강의담당시수를 담당교원의 수로 나눈 값으로 한다.

제3조(책임시수) ①전임교원의 주당 책임강의담당시수는 별표 2와 같다. 다만,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.

②책임강의담당시수는 대학 및 일반대학원 담당시간을 통산한다. 다만, 소속이 특수대학원인 경우에는 소속대학원, 대학 및 일반대학원으로 한다.(개정 2012.09.01)

③수강학생이 2인 이하인 일반대학원 담당강의의 경우에는 책임강의담당시수로 인정하지 아니한다.

제4조(한계시수) ①전임교원은 책임시간의 2배를 초과하여 강의를 담당할 수 없으며, 책임시간을 일부 면제받은 보직교원은 책임시간 외에 6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. 단, 부득이한 사정으로 한계시간을 초과하여야 할 경우에는 개학전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3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.

3-3-4~2 제3편 행 정

②한계시수라 함은 대학 및 일반대학원 담당시간과 타 대학(교) 출강시간을 통산한다.

제5조(초과시수) ①전임교원이 책임강의시수 이상의 강의를 한 때에는 강사료 지급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초과강사료를 지급한다.

②한계시수를 초과하는 강의에 대하여는 초과시수로 인정하지 아니한다.

③2항에도 불구하고 총장이 인정할 경우 초과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.(신설 2012.03.01)

제6조(책임시수의 미달) ①책임시수에 미달할 경우에는 이를 다음학기에 보충하여야 한다. 단, 교원이 학기중 보직 변경 등의 중대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
②책임시수의 보충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에는 시간강사료(특A급)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급여에서 공제한다.

③비정년트랙교원이 책임시수에 미달할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학기 시간강사료(A급)에 해당하는 금액을 급여에서 공제한다.

제7조(강의시간 배당) ① 전임교원의 강의시간 배당은 대학, 일반대학원, 특수대학원 순으로 하고 책임시수의 3분의 2 이상을 대학에서 담당하여야 한다. 다만, 특수대학원 소속 교원 및 책임시간이 6시간 이하인 교원들은 예외로 한다.

②강의담당은 동일학과와 동일학년에 치중할 수 없다.

제8조(타교출강) ①전임교원으로서 타교에 출강하고자 할 때에는 타교출강허가원(별지서식)을 개강 1주일 전에 총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, 총출강시수는 본교 강의를 포함하여 한계시수(최고 담당시수)를 초과하지 못한다.

②책임시수를 일부 면제받은 보직교원의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대학에 출강할 수 없다.

③연구교수, 책임시수 미달 교수는 타 학교에 출강할 수 없다.

제9조(기타) 강의담당시수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총장의 재가를 받아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2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2년 08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2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2년 09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3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3년 03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개정 2013.05.31.)

이 규정은 2013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4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5년 05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5년 06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5년 09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6년 01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6년 05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6년 09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3-3-4~4 제3편 행정

부 칙

이 규정은 2016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08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- ②(경과 조치)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임용되어 재직 중인 산학협력중점 교원의 책임강의 시수(별표 2)는 2018년 재계약부터 이 규정을 적용한다.

부 칙

- 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03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- ②(경과 조치) 이 규정 (별표2)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 3월 1일자 이후 신규 및 재임용되는 비정년트랙 산학협력중점 교원의 책임시수는 2018년 1학기에 한해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9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(별표 1) (개정 2012.09.01., 2013.03.01., 2019.06.25.)

교과목 유형별 강의시간 환산율

유형별	환산율	비 고
실험·실습·실기 교과목 (전공 및 교양 교과목 전체)	전임교수 : 학점수의 100% 강 사 : 실제시간수의 100%	
교양영어	전임교수 : 실제시간수의 80% 강 사 : 실제시간수의 100%	

(별표 2) (개정 2012.08.10, 2012.09.01, 2012.09.25, 2013.03.01, 2013.03.26., 2013.09.01., 2014.02.27, 2015.05.26., 2015.06.16., 2015. 09.22., 2016.01.26., 2016.05.24., 2016.09.30., 2016.11.29., 2017.08.29., 2018.03.27.)

전임교원 1주간 책임강의담당시수

구 분		1주간 책임시간	비 고
보 직 교 수	부총장, 처장	3	
	대학원장, 학장, 중앙도서관장, 전산정보원장, 신문방송국장, 부처장, 공동기기원장	6	
	행정실장, 평생교육원장, 국제어학원장, 창업보육센 터장, 교수학습개발센터장, 공학교육혁신센터장 연구윤리지원센터장	7	
전 임 교 수	정년트랙	일반 교원	9
		음악계 실기전담 교원	12
		산학협력 교원	6
		신진연구중점 교원	3
	비정년트랙	교육 및 연구전담 교원	9
		강의 전담 교원	15
		교양외국어 전담 교원	18
		산학협력중점 전담 교원	3

3-3-4~6 제3편 행 정

(별지서식)

타 교 출 강 허 가 원			담 당	장	장	총 장
본인은 다음과 같이 20 년도 제 학기간 타교에 출강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			
출강교명	출 강 교과목명	출 강 요 일	출 강 시 수		본교강의 시 간 수	출 강 의 기 간 수
			강 의 시 간	계		
			시부터 시까지			
			시부터 시까지			
			시부터 시까지			
* 단, 타교출강이 없을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.						
20 년 월 일						
대학		학과		직위		성명 (인)
						학 과 장 (인)
						대 학 장 (인)
가천대학교 총장 귀하						
* 유의사항 1. 타교출강은 주당 1일을 초과할 수 없음 2. 타교출강과 본교강의를 합하여 주당 1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3. 1시간은 40분 - 60분을 의미함						